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 인상〉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0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 인상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4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 인상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 외에 부과하는 추가 가산금 상한선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에서 20%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u>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u>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 ----- ----- ----- -----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에 <u>그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가산금(加算金)으로 징수한다.</u>

현행법 제8조¹⁾와 동법 시행령 제5조²⁾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장이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명목의 수수료)³⁾를 징수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한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외에 조례⁴⁾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 이내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가산금 제도는 외부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2024년 취합된 5개 지방자치단체 기준 폐기물처리시설별 가산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약 28억 8,000만원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5~10%인 2억 8,000만원의 가산금이 징수되었음.

-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할 수 있다.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4) 예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입수수료가산금으로 따로 징수한다.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별 가산금 징수 현황5]

(단위 : 만원)

운영 지자체	시설 종류	소재지	부과 대상 지자체	폐기물처리 수수료	가산금
인천광역시	소각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727,414	72,241
인천광역시	소각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948,561	94,856
광주광역시	매립시설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280,258	28,026
경기도 파주시	소각시설, 매립시설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173,367	8,668
경기도 이천시	소각시설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751,157	75,116
경상남도	가산금 미부과				
강원도	가산금 미부과				
제주도	가산금 미부과				
울산광역시	가산금 미부과				
충청북도	가산금 미부과				

자료 : 환경부

5) 가산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 제출 기관*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5개 시설(운영 지자체)에서 유입 폐기물에 가산금 부과 중

* 8개 광역지자체(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자료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의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가산금의 상한을 현행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가산금의 상한을 인상할 경우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므로, 의견 합의가 선행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미추홀구는 가산금 인상 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로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천광역시는 가산금 상한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환경부는 가산금 부과 여부 및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가산금을 20%

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